

#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혜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98
----------	------

발의년월일 : 2017년 11월 28일

발 의 자 : 김혜련, 박양숙, 김창원,  
이복근, 김선갑, 성백진,  
오승록, 권미경, 이병해,  
박마루, 유 청 의원(11명)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에는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에는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함(안 제2조제9호 신설).

나.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3항제5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정보취약계층"이란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제5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에 관한 사항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8. (생략)</p> <p><u>&lt;신설&gt;</u></p> <p>9. ~ 14. (생략)</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정보취약계층"이란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u></p> <p>10. ~ 15. (현행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p>
<p>제5조(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① ~ ② (생략)</p> <p>③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4. (생략)</p> <p>5. <u>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u></p> <p>6. ~ 14. (생략)</p> <p>④ (생략)</p>	<p>제5조(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에 관한 사항</u></p> <p>6. ~ 14.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